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918 |
|----------|-----|

발의연월일 : 2026. 4. 7.

발의자 : 이경숙, 박윤옥, 김현택,
한송연, 전혜연, 한근수,
김동훈

1. 제안 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 기반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돌봄통합 지원 목적, 정의 및 책무 규정 (안 제1조~제3조)
- 나.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다. 통합지원 사업 및 통합지원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9조)
- 라. 통합지원 창구, 협의체, 실무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5조)
- 마.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17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5. 관계법령 : 덧붙임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남양주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자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고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진료·간호·재활·호스피스 등 보건의료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정신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3. 노인성질환예방 등 장기요양사업
4.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돌봄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이 수립된 경우 필요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통합지원회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시장은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 시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

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②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과장, 복지행정과장,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여성아동과장,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법 제25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 기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3조(통합지원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통합지원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통합지원협의체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통합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실무협의체) ①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실무적 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협의한다.

1. 통합지원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계획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3. 그 밖에 통합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4.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남양주시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2. 설명회, 워크숍 등 시민 참여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4호를 삭제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조례안 제5조(통합지원 사업)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운영비 : 10,000천원 (참석자 수당 및 회의 운영비 등)
- 사업비 : 600,000천원

(단위 : 천원)

| 구 분 | 사업명 | 세부내용 | 예산 | 비 고 |
|--------|----------|----------------------|---------|-----|
| 돌봄분야 | 함께돌봄 | 가사, 식사, 이동지원 등 통합 지원 | 370,000 | |
| 주거분야 | 케어홈(중간집) | 퇴원환자 일시거주 및 적응 훈련 | 30,000 | |
| 지역사회거주 | AIP매니지먼트 | 맞춤형 케어플랜 및 민간 자원 연계 | 200,000 | |
| 합계 | | | 600,000 | |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 구 분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
| 총 소요액 | | 610 | 671 | 738 | 811 | 893 | 982 |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 운영비 | 10 | 11 | 12 | 13 | 14 | 16 |
| | 사업비 | 600 | 660 | 726 | 798 | 879 | 966 |

※ 국도비 사업으로 추계 예산이 어려워 매년 10%씩 인상

○ 운영비

- 통합지원협의체 회의 : 참석자 수당 등 지원

· 예 산 : 10,000천원

· 산출내역

(회의 수당 등) 100,000원 × 2회 × 20명 = 4,000천원

(운영비/홍보비) 6,000천원 × 1식 = 6,000천원

○ 사업비 : 600,000천원

- 돌봄분야(함께돌봄) : 공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 돌봄서비스 연계·제공

· 예 산 : 370,000천원

· 산출내역

(생활지원) 단가 25,320원, 2시간×주2회×4주×6개월×100명≒243,072천원

(식사지원) 단가 11,000원, 주2회×4주×6개월×134명≒70,752천원

(이동지원) 단가 11,400원, 3시간×월2회×6개월×134명≒54,993천원

- 주거분야(케어홈) : 병원 퇴원 후 돌봄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단기 보호 등

· 예 산 : 30,000천원

· 산출내역

(케어홈) 단가 74,060원, 주7회×4주×3개월×5명 ≒ 30,000천원

- 지역사회거주(AIP매니지먼트 운영) :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기관 지원

· 예 산 : 200,000천원

· 산출내역

(사업 운영비) 50,000,000원×4개소 = 20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국 305,000천원(50%), 도91,500천원(15%), 시 213,500(35%)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시의 재정여건 고려하여 사업량 검토

4. 작성자 : 복지국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 구 분 |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계 |
|--------------|-----|---------|---------|---------|---------|---------|-----------|
| 세 출 | | 610,000 | 671,000 | 738,100 | 811,910 | 893,101 | 3,724,111 |
| | 운영비 | 10,000 | 11,000 | 12,100 | 13,310 | 14,641 | 61,051 |
| | 사업비 | 600,000 | 660,000 | 726,000 | 798,600 | 878,460 | 3,663,060 |
| 재원 조달 | | 610,000 | 671,000 | 738,100 | 811,910 | 893,101 | 3,663,060 |
| 의존 | 소 계 | 396,500 | 436,150 | 479,765 | 527,742 | 580,516 | 2,380,989 |
| 재원 | 보조금 | 396,500 | 436,150 | 479,765 | 527,742 | 580,516 | 2,380,989 |
| 자체 | 소 계 | 213,500 | 234,850 | 258,335 | 284,168 | 312,585 | 1,282,071 |
| 수입 | 지방세 | 213,500 | 234,850 | 258,335 | 284,168 | 312,585 | 1,282,071 |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일상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 까지 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2.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하여 이용한 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끊임 없이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완결형 통합지원 연계 체계를 마련할 것
3.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권 단위의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 지원 생태계를 조성할 것
4. 통합지원 대상자가 통합지원의 내용,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 여부나 범위,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
5. 통합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6. 통합지원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재원을 확보하여 시·군·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자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시·군·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시·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신청·발굴 및 조사 등) ①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와 그 가족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종합판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하거나 발굴된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 및 필요도를 반영한 판정 결과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조정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면·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8조(비용지원 및 부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시장·군수·구청장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

2. 제10조에 따른 조사

3.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통합지원의 전문적인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